

부산지방법원 2024. 12. 10 선고 2024가단34896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4. 12. 10.

주 문

1.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9. 9.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19. 9. 10. 접수 제140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김정우

별지